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8년 2월 19일
- 나.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관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 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7조).
-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일자리로 창출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 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	-----

발의년월일: 2018년 2 월 19 일

발 의 자: 고기관 의원외 5 명

### 1. 제안이유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7조)

나.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를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로하며, 제15조제1항, 제2항을 제16조제1항, 제2항으로 하며,

제15조 제1항 본문 부분 중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를 제16조 제1항 본문 부분 중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로 한다.

제15조 제2항 본문 부분 중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6조 제2항 본문 부분 중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를 18조로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또는 청년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략)                      ① &lt;생략&gt;                      ② &lt;생략&gt;                      &lt;신설&gt;</p>	<p>제8조(현행 제7조와 같음)                      ① &lt;현행 제7조 ①항과 같음&gt;                      ② &lt;현행 제7조 ②항과 같음&gt;</p> <p>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년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8조(생략)                      ① ~ ③ &lt;생략&gt;                      ④ &lt;생략&gt;                      1. ~ 5. &lt;생략&gt;</p>	<p>제9조(현행 제8조와 같음)                      ①~③ &lt;현행 제8조 ①항~③항과 같음&gt;                      ④ &lt;현행 제8조 ④항과 같음&gt;                      1.~5. &lt;현행 제8조 ④항 1호~5호와 같음&gt;</p>
<p>제9조(생략)                      ① ~ ② &lt;생략&gt;</p>	<p>제10조(현행 제9조와 같음)                      ①~② &lt;현행 제9조 ①항~②항과 같음&gt;</p>
<p>제10조(생략)                      1. ~ 3. &lt;생략&gt;</p>	<p>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                      1.~3. &lt;현행 제10조 1호~3호와 같음&gt;</p>

제11조(생략)

1. ~ 4. <생략>

제12조(생략)

① ~ ④ <생략>

제13조(생략)

제14조(생략)

① ~ ② <생략>

제15조(생략)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생략)

제12조(현행 제11조와 같음)

1.~4. <현행 제11조 1호~4호와 같음>

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

①~④ <현행 제12조 ①항~④과 같음>

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현행 제14조와 같음)

①~② <현행 제14조 ①항~②과 같음>

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또는 청년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